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263 판결 모욕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9노263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희영(기소), 김현서(공판)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9고정10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이 이모티콘을 게재한 것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을 작성한 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 나.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K 아이디만이 표시되어 있었고, 위 K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없다.
- 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게시글 캡처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D 사이트의 해당 글 작성자는 피해자가 K를 통하여 제3자와 게임이용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캡처하여 올린 사실, 이에 다른 사람들은 위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비난하는 댓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글을 달았으며, 피고인도 댓글에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경멸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이모티콘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댓글을 단 다른 사람들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비난, 모욕할 고의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게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참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댓글을 단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K 계정명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K 계정에는 계좌번호와 이름, 생일, 사는 지역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웹툰 보조작가로 일을 하는 피해자의 그림도 올려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게시글과 댓글의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때 피고인이 올린 이모티콘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